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4년 11월 20일 (수) · 주간 제47호 · 통권 제1702호 · 11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구독료 월 30000원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경영박사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 11/ 20 통권 1702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11.15「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리스크 우선순위 평가의 이해
-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
- 사업이 힘드셨나요? 중간예납 추계신고 해보세요
- 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
- 국세청,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위해 감사원 '컨설팅'받아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안 및 밸류업 지원세제 적극 추진
- 「횡령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충실·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작성지침을 마련했습니다.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다가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새로운 사업 개시한 경우 기존의 세액감면 적용 안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면제)의 열거범위〉

개념구분	국내생산, 제조, 가공, 판매 면세되는 열거범위	해외수입품(부가세 면세조건)
미가공식료품	식용농산·축산·수산·임산 등	식용 농·축·수·임산물 등(좌동)
비식용 1차산물	국내생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면세안됨(과세)
수도, 연탄, 무연탄	부가세 면제	열거안됨(과세)
여성위생용품	부가세 면제	열거안됨(과세)
도서, 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방송 등, 전자출판물 포함	도서, 신문, 잡지, 서적, 전자출판물 포함
학술, 교육 관련	교육용역 포괄면세	과학, 교육, 문화용 수입재화
종교, 공익, 기증 등	종교, 자선, 학술, 구호단체 공급품	종교, 자선, 구호단체 기증 목적 수입
국가, 지자체 기증	국가, 지자체 등 공급재화·용역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기증목적 수입
이사, 이민, 상속	규정없음(일반과세 조건)	관세 면제, 간이세율 적용 재화
수출 후 재수입	해당안됨	관세가 감면되는 조건임
재수출조건 임시	해당안됨	수출 후 임시수입재화로 관세감면 조건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02호 / 주간 47호 2024. 11. 20. (수)

·발 행 인 : 이윤선
·제 작 : ㈜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④ 즉답(010-2672-2250)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⑧ CEO·CFO 경영에세이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 차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면제)의 열거범위	표지
CEO의 경영산책	리스크 우선순위 평가의 이해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무형자산 양도	5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 사원복 로고 부착	6
	- 부가세 공제 문의	
	- 인터넷쇼핑몰에서 할인쿠폰 회계처리	
눈에맞는절세미인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7
매일절세재무요점	-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 세법	9
	- 한국의 이중 과세가 기업과 개인의 전 주기에 미치는 영향	10
직장인Survival	상대의 성격에 따른 설득법 6가지 ②	11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유권해석)	-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인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사전법규법인-177, 2024.04.22)	12
	- 임대차계약기간 중 전월세를 전환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에 있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규재산-3396, 2024.01.11)	13
세정뉴스와 해설	돌아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15일 개통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다가 폐업 후 동일업종의 새로운 사업 개시한 경우 기존의 세액감면 적용 안됨	12
세무정보	- 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	15
	- 사업이 힘드셨나요? 중간예납 추계신고 해보세요	21
	- 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	25
	- 국세청,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위해 감사원 '컨설팅'받아	38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안 및 밸류업 지원세제 적극 추진	42
회계정보	- 「횡령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충실·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작성지침을 마련했습니다.	44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리스크 우선순위 평가의 이해

이 재 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기업이 주요 개별 리스크를 인식하였으면 개별 리스크의 발생가능성 및 영향도에 따라 총 리스크(total risk)를 산정하여 리스크 중요도 등급을 결정한다. 이에 기초하여 리스크 관리를 위한 리스크 우선순위(예: 리스크의 상, 중, 하)를 결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총 리스크(total risk)

개별 리스크 사건의 발생가능성과 영향도를 가지고 총 리스크(total risk)를 산출한다. 총 리스크는 발생가능성과 영향도의 곱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발생가능성 3등급, 영향도 4등급이면 총 리스크는 12점(3x4 = 12)이 된다.

총 리스크(total risk) = 발생가능성(likelihood) × 영향도(impact)

이렇게 계산된 총 리스크는 내재리스크(inherent risk)라고 부르기도 한다. 리스크 관리를 정교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제활동을 적용하기 이전의 리스크를 내재리스크(inherent risk)라 한다. 통제활동을 실시한 후에도 남아 있는 리스크를 잔여리스크(residual risk)라고 정의한다.

리스크 우선순위 평가

리스크 사건의 발생가능성과 영향도를 각각 5등급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총리스크가 최저 1점(발생가능성 1 x 영향도 1 = 총위험 1)에서부터 최고 25점(발생가능성 5 x 영향도 5 = 총 리스크 25)까지 나오게 된다. 이러한 총 리스크를 기준으로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총 리스크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1점 또는 2점의 리스크는 식별되지 않는다. 리스크를 식별하는 단계에서 리스 수준이 낮은 것은 사전에 걸러서 버리기 때문이다

리스크 관리 우선순위을 정하는 기준 : 리스크 성향(risk appetite)

리스크 등급은 보통 高·中·低 3등급으로 구분한다. 모든 리스크를 동일한 비중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高위험 리스크는 조직의 목표 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관리해야 하고 반대로 低위험 리스크는 가성비(價性比)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이 어떤 조직에서 리스크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을 리스크 성향(risk appetite)이라고 한다. 즉 리스크 회피형(risk aversion) 경영자는 리스크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도 高위험 으로 분류하여 엄격한 통제활동을 하는가 하면, 리스크 추구형(risk taking) 경영자의 경우에는 리스크 평가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과감히 低위험으로 분류하여 통제활동에 소요되는 시간, 인력 및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보다는 영향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이는 발생가능성이 낮더라도 영향도가 아주 큰 리스크의 경우 한 번 현재화 되면 조직 경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리스크는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한 번 사건화되면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므로 高위험으로 분류하여 통제활동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리스크 관리 우선순위는 발생가능성보다는 영향도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결정한다.

이런 종류의 리스크에는 금융회사에서 횡령사고 위험, IT서비스기업에서 통신장애 위험, 인터넷몰에서 개인정보 유출될 위험, 건설 및 제조기업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高위험으로 분류된 리스크는 반드시 회피해야 할 핵심 리스크이므로 즉각적인 통제활동 및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中위험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중대한 리스크이므로 면밀한 모니터링과 효율적인 통제활동이 필요하다. 低위험 리스크는 비록 리스크가 현재화 되더라도 수용 가능하다고 보며 다만 정기적인 리뷰와 적절한 통제활동이 필요하다. 리스크를 3단계가 아닌 4단계 이상 또는 2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호주 Standards Australia에서 제시하는 4단계 리스크 등급(low, medium, high, very high)이다.[1)]

1) 강기승. 리스크 관리실제, 2024.11, p.72.

〈표 1〉 호주 Standards Australia의 리스크 등급 평가 예시

		영향도				
		1	2	3	4	5
발생 가능성	1	low	low	medium	medium	high
	2	low	low	medium	medium	high
	3	low	medium	high	high	high
	4	medium	medium	high	high	very high
	5	medium	high	high	very high	very high

등급	비고
very high	- 최고경영층의 조치 필요 - 구체적 대응조치 및 경영층의 관리 책임을 명시해야 함
high	
medium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조치 필요
	- 담당 책임자의 관리 책임을 명시해야 함
low	- 일상적 업무 과정에서 통제활동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리스크 등급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경영층과 리스크 관리자가 함께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 등에 제약된 초기에는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High risk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8일 (금)	11월 11일 (월)	11월 12일 (화)	11월 13일 (수)	11월 14일 (목)
미 달 러	(USD)	1399.10	1385.40	1395.30	1401.10	1407.30
일 본 엔	(JPY)	914.21	906.17	907.60	906.60	905.60
영 국 파 운 드	(GBP)	1816.59	1789.17	1795.33	1785.42	1788.47
캐 나 다 달 러	(CAD)	1009.05	996.01	1002.05	1004.37	1005.61
홍 콩 달 러	(HKD)	180.04	178.17	179.44	180.13	180.86
중 국 원	(CNH)	194.32	193.45	193.98	193.37	194.42
유 로 화	(EUR)	1510.89	1483.97	1486.90	1487.90	1486.53
호 주 달 러	(AUD)	933.69	912.08	917.27	914.85	914.11
싱 가 폴 달 러	(SGD)	1059.84	1043.93	1046.34	1046.96	1048.42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17.72	316.12	316.39	315.78	316.39

무형자산 양도

Q

회사의 소유중인 특허권을 특수관계법인데 양도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 무상양도시(공동소유)
2) 유상양도시(가액을 얼마로? 계약서등 내용기재 필요사항등)
무상양도가 가능한지
유상양도시에는 얼마로 해야하고, 계약서등이 필요한지?
추후 특혀연차료는 누가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무형자산의 무상양도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 무상으로 거래하여 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가(감정가액)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유상양도에 따른 구체적 계약내용은 법률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Q

1. 용역의뢰자 : 법인
2. 용역제공자 : 개인 (기술직에서 퇴사한 개인)
3. 용역내용 : 기술자문(교육, 실습지도, 프로젝트 지원)
4. 용역기간 : 18개월
5. 월단위 자문료 정액지급

상기 용역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A

개인이 법인과 종속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독립적인 신분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유직업소득(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당연히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원복 로고 부착

Q 회사에서 사원복을 구매하고, 직원들에게 1벌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사원복에 회사 로고 또는 회사명을 넣어서 사원복을 사원들에게 지급해야지만 세무상 손금에 산입이 가능한가요?
요약적으로, 사원복에 로고 부착여부가 손금 산입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A 법인이 특정한 디자인의 유니폼을 제작하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로고가 없어도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부가세 공제 문의

Q 임원의 핸드폰 요금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핸드폰 명의는 개인 명의로 되어있고 납부는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핸드폰 요금의 부가세를 매입부가세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임직원 개인명의의 휴대요금을 법인에서 지원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업무관련성 입증책임은 회사(법인)에 있으므로 통화상대방이나 통화내역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자료를 구비하시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할인쿠폰 회계처리

Q 인터넷쇼핑몰에서 당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인터넷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이벤트성으로 당사계약과 상관없이 진행됨), ~월분 쿠폰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사실상 인터넷쇼핑몰에서). 이와관련해서 계정과목(회계처리)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판매촉진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A 최초 공급시점부터 할인해서 공급가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데, 귀사가 발급한 쿠폰이 아니고 판매대행업체가 발급한 것이라면 매출감액이 아닌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일반적으로 사업자간의 거래는 사전에 거래가액을 확정하고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 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확정된 거래가액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의 변경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여 아무런 다툼 없이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변경된 거래가액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인식 차이가 발생하여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거래가액에 대한 거래 당사자간의 다툼이 발생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재화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공급자는 우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함

상품이나 제품, 원자재 등 구체적 형태가 있는 재화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공급가액을 결정하고 또한 해당 재화의 시장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으므로 거래시에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래당사자간에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렇게 거래당사자간의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도 공급자는 우선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사용 · 소비하는 시점, 장기할부판매나 완성도지급기준조건 · 중간지급조건 등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가액의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예외적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급받는 자와 거래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했더라도 우선 재화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미발행 및 지연발행에 대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공급자가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되지 않은 금액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추후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정 소송 등을 통해 종결되면, 처음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일 또는 법원판결일을 작성일로 하여 최초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과의 차액만큼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 서삼46015-10818, 2002.05.17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제공완료 되고 공급가액 확정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역이 공급되고 해당 용역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되는 경우 공급자는 역무의 제공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나 또는 소송결과를 기다렸다가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서면3팀-1521, 2005.9.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하지만 용역공급자가 합의된 거래가액이 아닌 잠정가액으로 역무 제공 완료시점에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그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추후 잠정된 가액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다툼이 거래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로 변경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판결로 변경되면 최초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가액과 조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합의일이나 판결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 부가가치세과-950, 2013.10.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감액)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것입니다.

365 매일절세재무요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 세법

• 영유아 의료비 공제 대상 확대
6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1년 전 사용금액 105% 초과분의 10% 추가 공제(100만원 한도)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
공제 한도 300만~1800만원 → 600만~2000만원으로 상향
주택 기준시가 5억원 → 6억원 상향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총급여 기준 7000만원 → 8000만원 상향
연 월세액 한도 750만원 → 1000만원 상향

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요

정의	부동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애초 취득가격으로 계산하는 규정
예외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 매수, 수용된 경우 • 이월과세로 인해 증여받은 가족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세금이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적은 경우 •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해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水 한국의 이중 과세가 기업과 개인의 전 주기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전 주기		
사업 시작시 사업장 보유	사업 중 이익 창출	사업 후 가업승계
종부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5중 부과	법인세,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토지 등 양도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4중 부과	배우자상속세, 자녀상속세 이중 부과

* 배우자상속분에 대해 배우자에게 상속세 부과 후 배우자 사망시 자녀에 상속세 이중 부과

개인의 전 주기		
소득 창출시	소비 활동시	자산 상속시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중 부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3중 부과	배우자상속세, 자녀상속세 이중 부과

木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감면 내용

구분	내용
세액공제 (조특법 §10)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 당기발생액 30% +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 한도) * (코스닥상장중견) 당기발생액 25% +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5% 한도) * (대기업 및 기타 중견기업) 당기발생액 20% +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 한도)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발생액 30%(중소 40%) +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 한도)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중소 25%, 중견 8%, 일반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50%, 2% 한도) * 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 - 직전 과세연도 지출액)×(중소 50%, 중견 40%, 일반 25%)
기타 조세지원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등(조특법 §10의2)

상대의 성격에 따른 설득법 6가지 ②

2. 내성적인 사람
- 시간을 들여 설득한다

내성적인 사람을 설득할 때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신뢰를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타입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열지 못하면 아무리 설득해 봐야 소용없다.

따라서 먼저 충분히 마음이 통하도록 노력해서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단, 내성적인 사람은 타인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지만, 일단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면 다소 무리한 요구라도 확실하게 들어주는 의리가 있다.

최 신 판 례 예 규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인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사전법규법인-177, 2024.04.22

▌질 의

• 비적격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분할하는 경우 사업기간요건의 판정

▌회 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의 물적분할(이하 '1차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A사업부문)를 분할(이하 '2차 분할')하는 경우로서,

1차 분할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분할법인이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위배함에 따라 1차 분할이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2차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1차 분할 전 분할법인의 A사업부문에 대한 사업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규법인-155, 2024.01.24

▌질 의

• 질의법인은 토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토목공사 시 굴토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H형강을 설치하는데, 하나의 공사가 완료되면 H형강을 회수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 재사용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H형강을 건설용 장비로 계상한 후, 법인칙 [별표6]에 따른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있음

질의

•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 2024.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전월세를 전환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에 있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규재산-3396, 2024.01.11

▌질 의

- 직전임대차계약 기간(월세, 2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2년의 갱신계약(월세)을 체결한 경우로서, 갱신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갱신계약('22.12. ' 24.12.)이 소득령 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전제

▌회 신

직전임대차계약 기간(월세, 2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2년의 갱신계약(월세)을 체결하고 갱신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전환된 임대보증금이 전환 전 임대료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한 임대보증금 대비 동일하거나 낮은 경우, 해당 갱신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다가 폐업 후 동일업종의 새로운 사업 개시한 경우 기존의 세액감면 적용 안됨

거주자가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창업에 따라 적용받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법규소득-710, 2023.12.19

▌질 의

- 질의인은 '19.00.00. 음식점업을 창업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감면기간 중인 '23.00.00. 해당 사업을 폐업한 후
  -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 상이한 장소에서 '23.00.00. 동일한 업종을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사업자가 감면기간 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과세기간에 동일한 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 남은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창업에 따라 적용받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돌아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15일 개통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늘릴 수 있는 팁도 제공한다.

연말정산이 생소한 사람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주택담보대출, 주택청약저축,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20일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항목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하면 찾아볼 수 있다.

'신용·체크, 어떤 카드가 유리?' 연말정산 미리보기서 최적절세 계산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통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최적 절세를 위해 지출계획 조언 및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다양한 절세 꿀팁들을 제공한다.

가장 큰 공제 중 하나인 카드·현금 사용 공제의 경우 공제 한도나 공제율 차이로 섞어 쓰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

만일 올해 연봉이 6000만원이고,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 올해 11월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이 3100만원인 사람이 연내 300만원을 추가 지출한다고 하면, 체크카드로 쓸 때 신용카드로 썼을 때보다 최대 15만원 정도만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제율 차이 때문으로 신용카드 15%, 체크나 현금은 30%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세법이 적용돼 있긴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p 인상(10%→20%), 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40%→80%) 등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 계산할 수 없다.

항목별 절세 팁에서는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 등 연말정산 결과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제공하고, 공제 항목별로 절세 팁과 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살펴볼 수 있다.

맞춤형 안내에서는 가능성이 높으나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를 선정해 꼭 필요한 공제 항목만 요건·혜택·증빙서류를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로, 올해는 기부금 공제 등 안내항목을 7가지로 확대하고, 안내인원도 43만명으로 전년보다 11만명 확대했다.

맞춤형 안내 대상자는 분석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자신이 연말까지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해 성년이 된 2005년 출생 자녀 및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하다.

2006년 이후 출생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11월 이후의 지출·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

- 국세청, 2024. 11

□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1. 15.(금)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 ~ 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합니다.

□ 이 외에도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합니다.

○ 11.20.(수)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 추가 발송

□ 앞으로도 국세청은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궁금증을 먼저 해소해 드림으로써 보다 쉽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환급? 납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먼저 준비하세요

□ 국세청이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보고 스마트한 연말 지출·저축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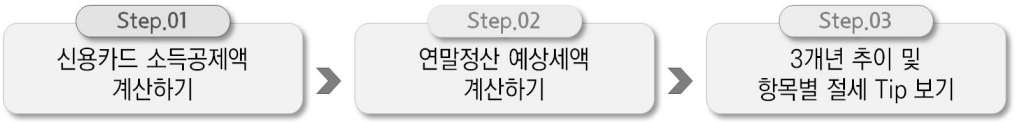

□ [Step.0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이용방법) 1~9월간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지출금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Tip)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소비 금액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30%) < 대중교통·전통시장(40%)

| 소득공제 계산의 달인 이절세씨의 지출계획 조정 알아보기 |

Q. '24년 중 신용카드를 이미 3,100만원 사용한 이절세씨, 냉장고(300만원)를 새로 살까 하는데 신용카드로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체크카드로 사는 게 좋을까?

* 이절세씨의 '24년 총급여는 6천만원, '23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3천만원으로 가정

case 1) 올해 안에 냉장고를 체크카드로 산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325만원 (①+②)

① (기본공제) (3,100만원-1,500만원)×15%+300만원×30% > 300만원(한도) = 300만원

②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만원+300만원) - ('23년 신용카드 사용액(3,000만원)×105%)] × 10% = 25만원

case 2) 올해 안에 냉장고를 신용카드로 산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310만원 (①+②)

① (기본공제) ['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만원+300만원) - 총급여의 25% (6천만원×25%)]×15% = [3,400만원 − 1,500만원] × 15% = 285만원

②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만원+300만원) - ('23년 신용카드 사용액(3,000만원)×105%)] × 10% = 25만원

☞ 체크카드로 냉장고를 사면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보다 최대 15만원 더 소득공제 가능

□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이용방법) 신용카드 외 공제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제공해 드리며,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①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②결혼세액공제(50만 원), ③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p 인상(10%→20%), ④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40% → 80%)은 현재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Tip) 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계획에 맞게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해 봄으로써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Step.03] 항목별 절세 도움말 (Tip)

○ (이용방법)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 등 연말정산 결과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제공하고, 공제 항목별로 절세 Tip과 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제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35세 무주택자 김절약씨의 청약저축 vs 연금 전략 세우기 |

Q. 작년보다 연봉이 올라서 공제금액을 똑같이 넣으면 세금이 더 나오는데, 여윳돈 300만 원을 주택청약저축에 넣어야 하나? 연금계좌에 넣어야 하나?
* 김절약씨는 기본공제(150만원) 외에 다른 소득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

case 1. (연봉 6천만원, 소득금액 4,575만원, 세율 15% 적용) 같은 금액이라도 연금계좌에 납입을 해야 절세 혜택이 더 크겠구나~ 연금계좌(퇴직연금계좌 포함) 납입금액 한도가 900만 원이라 아직 600만 원 남았으니 납입액을 늘리면 더 절세할 수 있겠다!

주택청약저축에 넣었을 때	**연금계좌**에 넣었을 때
300만 원×40% = 120만 원 소득공제 → 120만 원×15% = **18만 원 세액공제**	300만 원×12%* = **36만 원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5,500만원 이하자는 15% 공제)

case 2. (연봉 7천만원, 소득금액 5,525만원, 세율 24% 적용) 주택청약저축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28.8만원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36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계좌 납입이 유리하네!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연금계좌에 납입을 해야겠다!

주택청약저축에 넣었을 때	**연금계좌**에 넣었을 때
300만 원×40% = 120만 원 소득공제 → 120만 원×24% = **28.8만 원 세액공제**	300만 원×12%* = **36만 원 세액공제**

(유의사항) ✔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55세 전 중도해지 시 15% 기타소득세 과세

✔ 연금계좌 납입 시 세제 혜택이 크나, 주택청약 등 본연의 목적을 고려한 판단 필요

2 「맞춤형 안내」가 필요한 정보만 콕 짚어드립니다.

□ 「맞춤형 안내」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를 선정해 꼭 필요한 공제 항목만 요건·혜택·증빙서류를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행정역량강화TF」 주요 추진사항)

○ 기부금 명세서·임대차 신고자료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하여 대상자별로 홈택스·모바일(카카오·네이버)로 개별 안내를 실시합니다.

○ 올해는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하여 안내항목을 7가지로 확대하고, 안내인원도 43만명으로 확대하여 전년보다 11만명(34.4%) 증가하였습니다.

* 공제율이 5%p 한시 상향된 '21·'22년 귀속 기부금 이월분을 먼저 공제받도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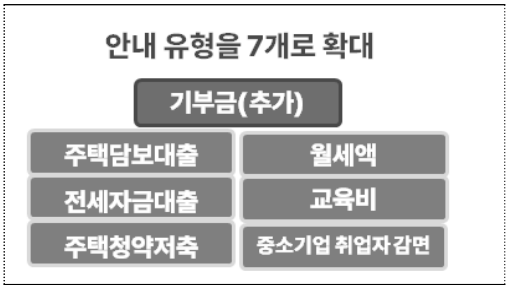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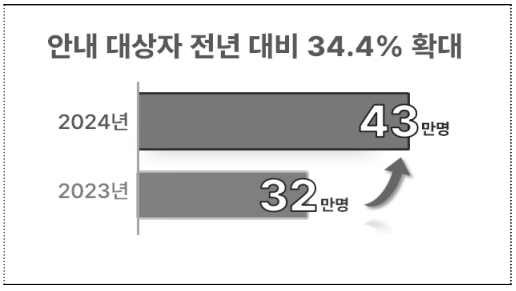

□ 맞춤형 안내 대상자는 분석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말(12.31.)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꼼꼼히 판단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11월 안내 시 무주택자였으나 12.31.까지 주택 취득 시 → 월세액 세액공제 불가

| 맞춤형 안내를 이용한 박천사씨의 기부금 세액공제 절세사례 |

• 박천사씨는 '21.2월 사회복지센터에 7백만원을 기부하고,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월기부금) 2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음

❁ 박천사씨의 '21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내역(가정)

(산출세액) 1백만원, (일반기부금 기준소득금액) 3천만원

(공제한도) 3천만원 × 30% = 9백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5백만원 × 20%* = 1백만원 (산출세액인 1백만원 한도로 공제)

(이월기부금) 7백만원 – 5백만원 = 2백만원

* '21~'22년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20%, 초과 35% 적용 ('23년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적용)

• 박천사씨는 국세청이 '24.11월 발송한 카카오톡 「맞춤형 안내」를 받고서야 '25.1월 연말정산 시 '21년 발생한 이월기부금 2백만원을 공제할 수 있어 조금이나마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참고 - 자주 묻는 질문

1 올해 결혼세액공제가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적용이 안되나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현재 기준으로 '24년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증가분·전통시장 공제율 : (현행)10% / 40% → (개정안) 20% / 80%

2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계산결과대로 내년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11월 이후의 지출·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올해 성년이 된 자녀('05.1.1. ~'05. 12.31.출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 자녀('06. 1. 1. 이후 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간혹, 미리보기 서비스 때에는 신용카드사 등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내년 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4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정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안내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나, 분석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가 있으니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12.31.)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힘드셨나요? 중간예납 추계신고 해보세요

- 국세청, 2024. 11

□ (추계신고 개요)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2.(월)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text{중간예납 추계액} = \left[\left(\text{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times 2 - \text{이월결손금}\right) \times \text{종합소득 공제}\right] \times \text{기본세율} \div 2 - \text{중간예납기간의 세액공제 등}$$

○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례 |

• 마포세무서에서는 서울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B씨에게 2024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원을 고지하였습니다.

• B씨는 2023년에 비해 2024년 사업실적이 크게 줄어 상반기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를 30만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습니다.

→ 중간예납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여 추계액 신고할 수 있으며, 50만원 미만이므로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B씨에게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① 중간예납세액(고지)	750,000원

B씨의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① 2024년 1~6월 종합소득금액	7,000,000원
② 종합소득 연간환산액(①×2)	14,000,000원
③ 종합소득공제	1,500,000원
④ 종합소득과세표준(②-③)	12,500,000원

② 중간예납세액 x 2 (=전년도 종합소득세액)	1,500,000원	>	⑤ 산출세액(④×기본세율)	750,000원
			⑥ 중간예납산출세액(⑤×1/2)	375,000원
			⑦ 세액공제·기납부세액 등	75,000원
③ 전년도 종합소득세액 x 30%	450,000원		⑧ 중간예납 추계액(⑥-⑦)	300,000원

□ (의무적 추계신고)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붙임2 참조).

* (홈택스·손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추계액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 아울러,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3.(월)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초과: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중간예납 추계액 분납 가능 금액과 납부기한 |

► 중간예납 추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간예납 추계액	납부세액 (납부기한 2024.12.2.)	분납세액 (납부기한 2025.2.3.)
사례①	12,500,000원	10,000,000원	2,500,000원

► 중간예납 추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중간예납 추계액	납부세액 (납부기한 2024.12.2.)	분납세액 (납부기한 2025.2.3.)
사례②	2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사례③	35,000,010원	17,500,010원	17,500,000원

붙임 1 주요 문답 (Q&A)

1 올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아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지 않은 개인병원 사업자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 예.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 신고하여야 합니다.

* '23년 귀속 수입금액이 도소매 등 3억원 이상, 음식·숙박 등 1.5억원 이상,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0.75억원 이상,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2 중간예납 추계 신고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 예. 중간예납 추계 신고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와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안내]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 12. 4.(수)까지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를 홈택스나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 해야하나요?

○ 아니오.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습니다.

5 중간예납 추계액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예. 신고한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❶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배당가산액	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①
	부동산임대업 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 계					

❷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소득별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②		
	부동산임대업 외			③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 계				

※ 작성요령

1. ❶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 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3. ③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

- 국세청, 2024. 11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또한,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하여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문제 제기되는 등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하여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 최근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고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고 있어 부당한 환급을 막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배제 업종(호텔업·여관업 등)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하여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세무대리인이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요청 할 예정입니다.

□ 부당 공제·감면 신청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며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 국세청은 인력 여건상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도 업무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한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 세액공제·감면 제도 사후관리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매년 공제·감면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법인세·소득세 등 공제·감면 사후관리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잘못된 공제·감면 신청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주요 공제·감면 점검 사례 】

1 주소세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 청년 유튜버 A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지만 용인 소재 공유오피스에 서류상 사업자등록(월 2만원의 월세만 납부)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주변인의 제보에 의해 관할 세무서는 현장 확인 실시
관할 세무서는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지 하였으며, 감면받은 소득세 및 가산세 00억원 추징 예정

2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 치과기공업을 영위하는 4개 업체(B·C·D·E)는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음
하지만, 4개 업체 모두 불법 R&D 브로커로 의심되는 동일한 컨설팅 업체와 거래하였고, 타사의 논문 및 특허 등을 단순히 인용·복제하여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음
이에, 인건비 0억원을 전액 부인하고 0천만원 추징하였음

3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 F세무법인은 환급세액의 30%를 수수료로 내면 고용증대 세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납세자에게 제안한 후 경정청구 신청
하지만, 현장확인 및 법인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해 F세무법인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직전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감소시키고 당해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부당 환급신청한 것을 확인하고 경정청구 거부
또한, F세무법인에 대하여 세무사징계위원회 회부 예정

2 악의적 조세회피행위 엄정 대응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며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감면

○ 일례로 용인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약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용인·송도 등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 중 실사업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자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 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일부 유튜버는 개인계좌로 수취한 후원금이나 국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금원 등이 과세당국에 쉽게 포착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 후원금이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득은 추적이 쉽지 않지만, 국세청은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 외환자료,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최근 2년간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47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또한,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누락하는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 국세청은 '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부당한 R&D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에는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원의 세액을 추징하여 추징세액이 '21년의 27억원 대비 5.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규모·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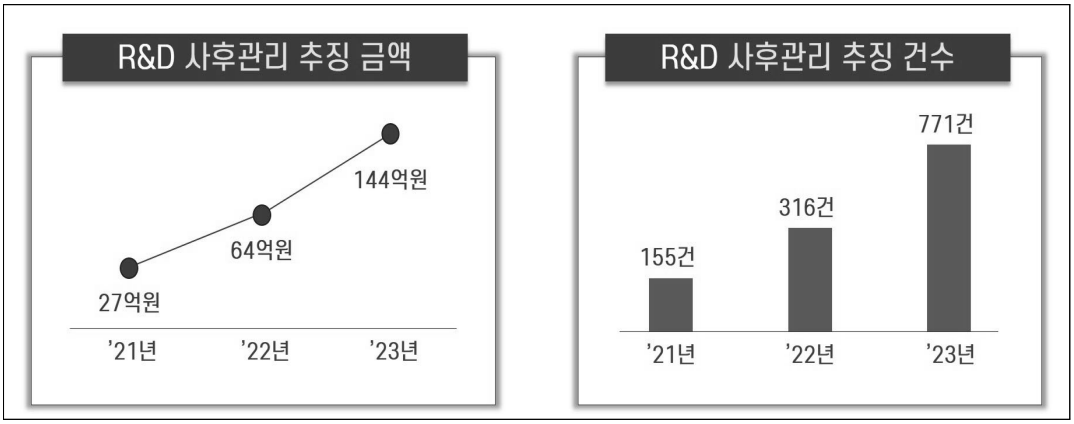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 또한,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하여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당한 세액공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국회·언론에서 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문제 제기되는 등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하여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며,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부당공제를 방지하겠습니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최초 공제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만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여관업 등) 등 일부 업종은 감면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에는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근로계약서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고 있어 부당한 환급을 막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배제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하여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세무대리인이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요청 할 예정입니다.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납부 도움자료 및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더욱 개선하여 세법에서 정한 혜택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하지만,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 공제·감면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 한정된 국세청 인력으로 전수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나, 고의적으로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사업자를 집중 점검하여 과세사각 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 과다 공제·감면은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포탈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부당 공제·감면 사례

1 유튜버가 공유오피스에 주소세탁하여 부당하게 청년창업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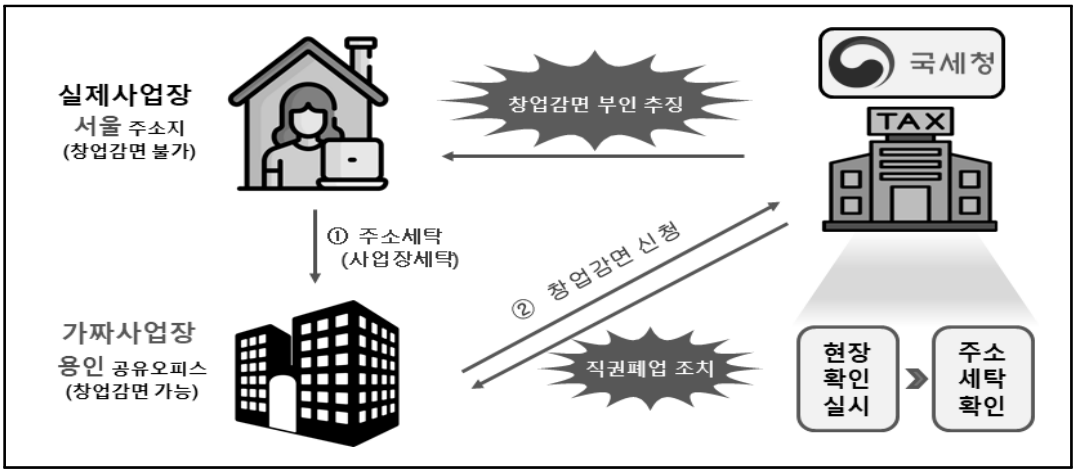

□ 부당감면 혐의

○ 청년 유튜버 A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지만 가짜 사업장인 용인 소재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

○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얻으면서도 청년창업감면을 적용받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것 같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인의 제보에 의해 관할 세무서는 현장확인 실시

○ 공유오피스는 약 천여개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현장확인 결과 별도로 분리된 사무공간 없이 호수만 구분되어 있고 주소세탁을 위해 우편물 수령만 가능한 장소임이 확인됨(사업자는 월 2만원의 월세만 납부)

□ 조치사항

⇨ 세무서는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조치하였으며, 감면받은 소득세 및 가산세 00억원 추징 예정

2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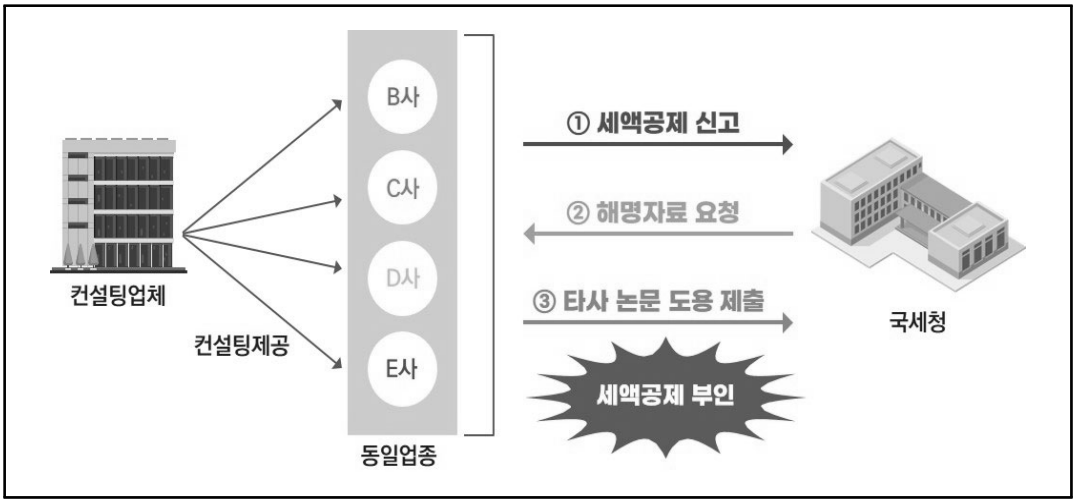

□ 부당공제 혐의

○ 치과기공업을 영위하는 B·C·D·E기업은 신고 시 자체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 0억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0천만원 신청

○ 4개 업체 모두 연구개발 활동 여부가 불분명하고 동일한 컨설팅 업체와 거래한 것이 확인되는 등 불법 R&D 브로커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 없이 부당 세액공제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었음

○ 담당 국세조사관은 연구개발 활동 증빙자료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추가로 분석하였고, 검토 결과 4개 기업 모두 타사의 논문, 특허 등을 단순 인용·복제한 것으로 확인

□ 조치사항

⇨ 자체 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 신청한 인건비 0억원 비용 전액 부인하고 0천만원 공제세액 추징

3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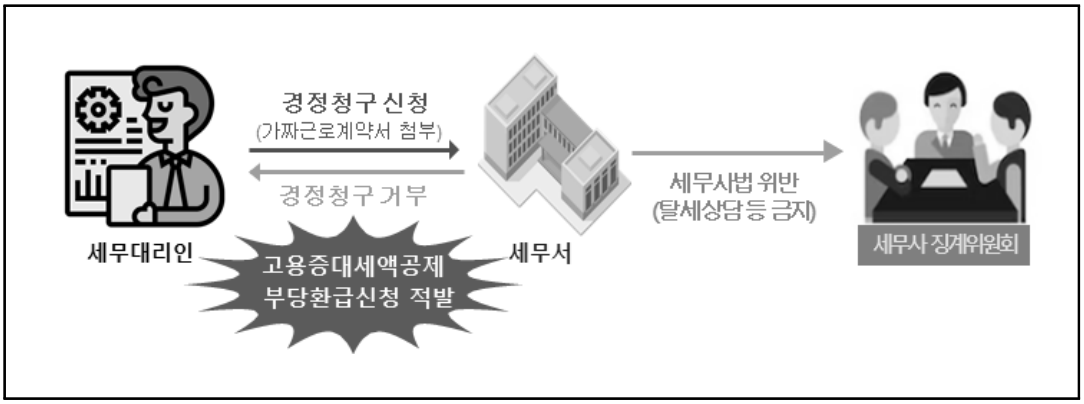

□ 부당 경정청구

○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FF세무법인은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BB산업에 접근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게 해줄테니 환급세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 줄 것을 제안

○ 경정청구를 수임한 FF세무법인은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년에 근로기간을 1년이상으로 계약한 근로계약서 ○장을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위조하여 '20년 상시근로자 수를 감소시키는 등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 00백만원 경정청구

□ 조치사항

⇨ 경정청구 거부처분 후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세무법인을 세무사법(탈세상담 등의 금지) 위반으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

붙임 2 - 공제·감면 제도 운영 현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제도개요)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 초기 세부담 경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50%~100%)하고 있습니다.

○ (감면대상) 제조업·건설업 등 총 18개 업종이 해당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15~34세)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구 분	청년(15세 ~ 34세 이하)	비청년(34세 초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50%	감면없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100%	50%

* 서울, 인천·경기(송도·용인 등 일부 지역 제외)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 (감면현황) 최근 3년간 감면규모 및 감면건수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21년 대비 감면규모는 1.7배, 감면건수도 1.7배 증가하였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모·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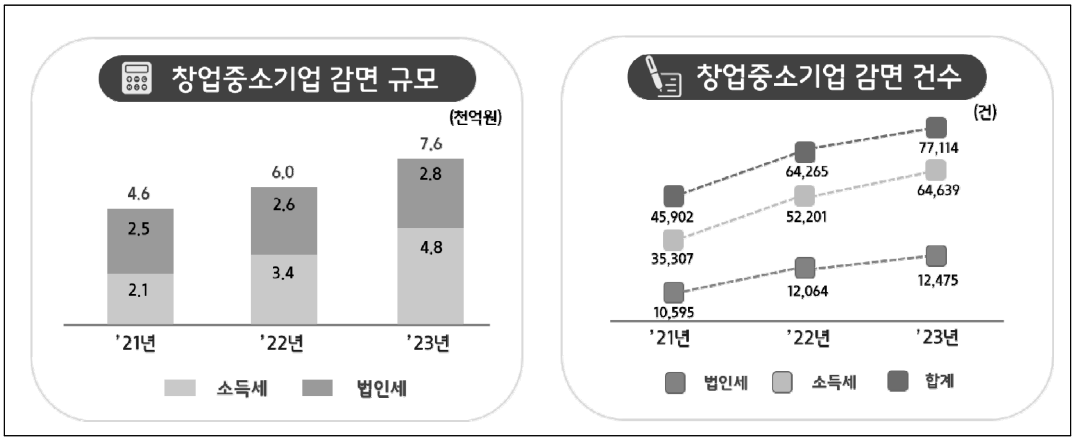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제도개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술 축적 및 우수 인력 확보 등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중 일부 비용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 (공제대상) 내국인이 세법상 “연구개발”과“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세법에서 정하는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 (공제현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지난해의 경우 약 5만 5천여 개 기업이 약 4.6조원의 세금을 공제받았고, ’21년 약 2.7조원 대비 약 70% 증가하였습니다.

| R&D 세액공제 규모·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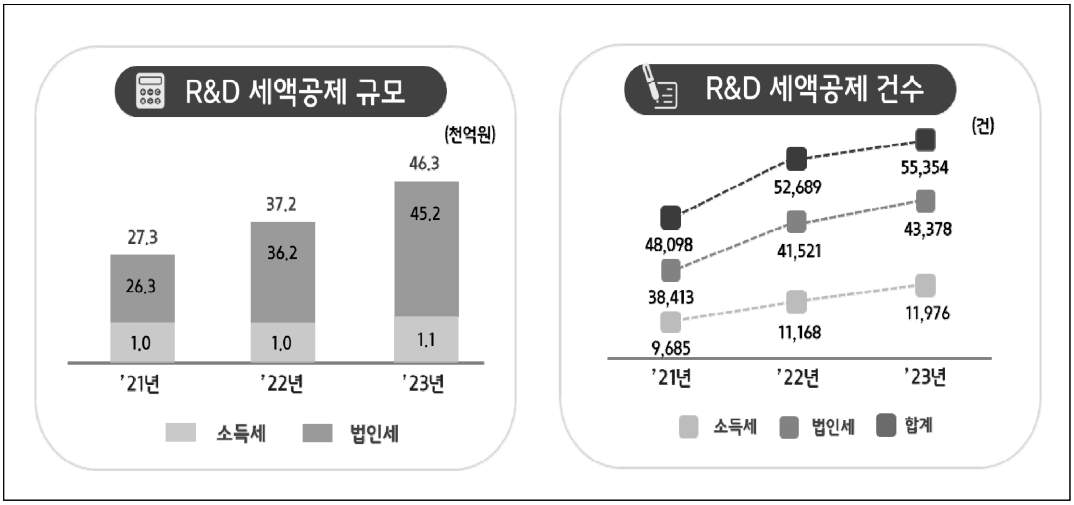

고용증대 세액공제

□ (제도개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최대 3년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명당 일정금액(400만원~1,200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 (공제대상) 호텔업·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닌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청년(15-29세),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더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공제세액 |

구 분	중소기업(3년간 공제)		중견기업(3년간 공제)		대기업(2년간 공제)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800만원	400만원	400만원

○ (공제현황) 최근 3년간 공제규모 및 공제건수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공제세액은 1.6배, 공제건수는 1.8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규모·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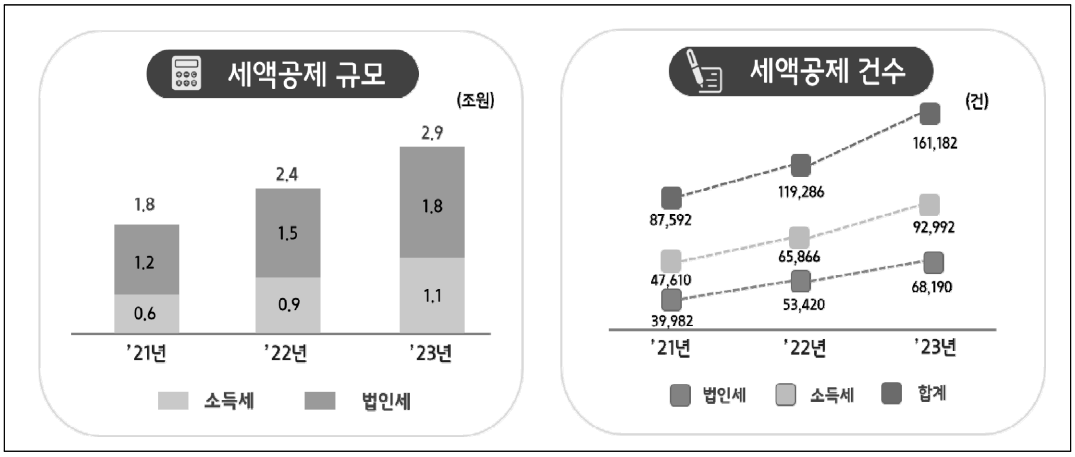

국세청,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위해 감사원 '컨설팅'받아

- 국세청, 2024. 11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감사원(원장 최재해)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하 '의료비 환급금')에 대하여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최종 의견을 받았습니다.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하여야 하나

- 건보공단에서는 지출연도 다음해 8월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지급되어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발생합니다.

○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받고자 건보공단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건보공단의 일정상 시기를 앞당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였지만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판단근거를 마련하고자 감사원에 『적극행정 컨설팅』을 신청하였습니다.

□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활용한 가산세 면제 근거 마련)

○ 감사원은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국세청을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경청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례 및 기획재정부 질의 등 다방면으로 심도 깊은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건보공단의 업무처리방식과 지급시기에 대한 감사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보공단으로부터 설명 자료를 협조 받아 감사원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 공유를 진행하였습니다.

○ 국세청과 감사원이 협업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내어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불편에 귀 기울이고 적극행정으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의료비 과다공제 사례 |

○ 세종시에 사는 근로자 이○○씨는 '22년 위암 수술을 하면서 총급여 4천만원 중 의료비로 1,200만원을 지출하고 '23년 2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162만원*을 공제 받았습니다.

* 총급여 4천만원 × 3%=120만원을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 1,080만원의 15%

- 이후 '23년 9월에 건보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으로 500만원을 돌려받아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씨는 '24년 9월에 회사로부터 해당 의료비 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아 과다공제를 받았으므로 가산세 16만원을 포함해 근로소득세 91만원을 추가납부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은 이○○씨는 연말정산이 끝나고 6개월도 더 지나서 돌려받은 사후환급금을 연말정산 때 차감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씨의 의료비 추가납부 금액 >

1) 정상신고 시 본세 : 1,200만원-(4천만원×3%)-500만원(의료비 환급금) = 580만원×15% = 87만원, ∴ (과소납부 세액) 162만원(당초신고) - 87만원(수정신고) = 75만원
2)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 (75만원×10%)+(75만원×0.022%×539일) = 163,935원 (경과일수는 '24.11.10.에 개인이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

참고 1 자주 묻는 질문

1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절감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건보공단에서 돌려받은 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사례]

'24년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 A가 의료비로 250만 원을 지출했으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3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제 환급금 수령액
= {250만 원 - (5,000만원 × 3%)} - 3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 30만 원 = 70만 원

2 아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았는데,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수진자인 아버지가 신청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한도로 하므로, 본인 외의 자에게 상한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라도 해당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가 지급받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보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금액이 더 커지는 문제 발생

3 3년 전 국세청의 과다공제 점검 때 의료비 상한제 환급금을 잘못 공제받았던 부분을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를 냈었는데, 이번에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나왔다면 3년 전에 냈던 가산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므로, 기존에 동일한 의료비 상한제 환급금으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만 가능하므로, '19년 귀속('20.5.31.신고기한)이후분 부터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2 의료비 과다공제 점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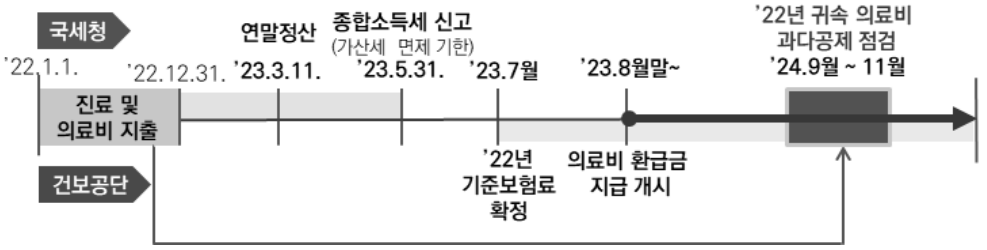

○ 근로자는 '22년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대해

1) '23.3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22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액' 신고·납부

2) 건보공단은 '23.8월말경 '22년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후, 의료비 환급금 지급대상 개인에게 지급안내문 발송 및 환급 실시

3) 의료비 환급금을 지급받은 개인은 '22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이행

☞ '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3.5.31.) 경과 후 수정신고자는 가산세 부담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안 및 밸류업 지원세제 적극 추진

- 기획재정부, 2024. 11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11(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방문하여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지속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과 관련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간담회 참석자 : 기업 관계자 및 협회 인사 등 총 10여명

간담회는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상속세 개편 및 밸류업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서 상정되기에 앞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현행 조세제도와 그 개선방안 관련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조세소위 논의 시 반영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위기·성장 둔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민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세제개편을 통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 조세체계 정상화는 투자·소비 등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작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공통적으로 기업 승계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세부담을 지적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매각·폐업을 고려하게 된다고 호소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된 재산 가액에 대한 세금 납부로 어려움을 겪을 우려에 불안함”을 표현하며, 일률적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금번 세법개정안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다른 참석자는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안정적인 가업승계는 필수적인데 상속세 부담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에 김 차관은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기업 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 기업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시장성 결여를 고려하여 할인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할증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다른 관계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상속할 때가 아니라 경영권을 실제 매각할 때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조세소위 논의 시 충실히 전달하고, 상속세 부담 적정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상속세 개편안과 밸류업 지원세제 등 세법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요청하였다.

「횡령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충실·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작성지침을 마련했습니다.

- 금융감독원, 2024. 11

주요 내용

◈ '25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기재해야 합니다. ('24 사업연도는 선택 적용 가능)

*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주주·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되어 기업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이용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세부 작성 기준과 참고 사례를 마련했습니다.

◈ 다만,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중 비금융회사는 '26사업연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은 사전 예고 [11.11.(월) ~ 12.2.(월)] 를 거쳐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설명회 개최, 안내·홍보 등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자금 부정 통제' 공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횡령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충실·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작성지침을 마련했습니다.

1 배 경

□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이하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 (이하 '자금 부정 통제') 을 추가 공시할 필요
('24사업연도는 기업이 선택하여 공시 가능)

*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주주·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류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첨부 (☞ 참고 : 운영실태보고서 위치 안내)

◦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 를 충실·명료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작성 지침과 참고 자료 (작성 사례, FAQ)를 마련*

* 실무 TF (3회), 내부회계 실무 자문위원회 (1회), 회계심의위원회 (1회) 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기업, 학계, 회계법인, 유관기관 등) 로부터 의견수렴

< '자금 부정 통제' 공시 개요>

◈ (도입 배경) 회사가 **'자금 부정 통제'**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 ('22.10.6.)」 中 '공시 강화 방안'의 일부

◈ (대상 회사)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회사***(「외부감사법」 §8①에 따른 **내부회계 설계·운영 대상**)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금융회사는 1천억 원 이상)

◈ (관련 규정)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별표6>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기준**」 문단 25 및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별첨 1) 운영실태보고서 예시 (붙임)

※ '24사업연도에 한해 기존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선택 시 '자금 부정 통제' 미공시 가능

2 주요 내용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작성 사례 및 FAQ	
공시 서식	'(별첨1) 운영실태보고서 예시'에서 항목별 상세 설명	참고 자료	서식 작성 사례 및 작성시 유의사항 등 제공

□ (공시 서식)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과 '실태 점검 결과'를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상세 기준 제공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별첨1) 개정)

◦ (기재 대상) 전사적 수준 통제*와 자금 통제 중 자금 관련 부정 위험을 예방·적발하는데 (직접) 관련된 통제로 한정 (의무 사항)

* 회사 전체 또는 업무 수준 통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예 : 내부고발 등 부정 방지 제도)

- 그 밖의 업무 수준 통제도 자금 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기재 가능 (선택 사항)

◦ (기술 정도) 회사의 통제 기술서 상 통제 활동 내용을 요약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대로 기술하는 것 또한 허용

◦ (점검 결과) 수행 부서, 수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계획 또는 이행 결과를 기술

* 하나 또는 여러 개 미비점의 결합으로서 재무제표 상 중요한 왜곡 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를 의미

◈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예시 (운영실태보고서 첨부)

구분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	설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
자금 통제	<법인인감, OTP 사용통제> 감사팀에 의해 법인인감, OTP의 물리적 접근이 통제되고 있으며, 감사팀장이 사용 대장에 사용 목적을 검토·승인해야 날인·사용이 허용됨	테스트 수행 결과, XX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XXX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임 (내부회계팀, 'X1.7월, 'X1.10월, 'X2.1월)

□ (참고 자료) 실무자의 작성 편의를 돕고, 유사한 통제 활동을 단순 열거함에 따른 과다 공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 사례와 FAQ 마련

□ (시행 시기) 내부회계 감사 대상인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와 검토 대상 중 '금융회사 (자산 1천억 원 미만, 대형 비상장)' 는 '25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 ('24사업연도는 선택 적용)

◦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
(☞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정)

「횡령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충실·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작성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시행 시기>

구 분	내부회계 감사 대상	내부회계 검토 대상
상장회사	자산 1천억 원↑ ('25년 의무적용)	자산 1천억 원↓ 금융회사 ('25년 의무적용)
		자산 1천억 원↓ 비금융회사 ('26년 의무적용)
대형 비상장 회사	n/a	자산 1천억 원↑ 금융회사 ('25년 의무적용)
		자산 1천억 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26년 의무 적용) 자산 1천억 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자산 5천억 원↑ 기타 비상장회사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 효과)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함에 따라 경영진과 통제·점검 수행자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 가능

◦ 본격적인 공시에 앞서 필요사항을 충실·명료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 작성 지침과 참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

□ (향후 계획) 새롭게 마련한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서식과 참고자료(사례, FAQ)는 유관 협회*를 통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배포·안내 (11.4.)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 12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금 부정 통제' 공시의 주요 내용, 작성 사례, 유의 사항 등을 안내

◦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 등의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사전 예고 [11.11.(월) ~ 12.2.(월)]를 거쳐 연내 완료 예정

※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 관련 개정된 공시 서식과 참고 자료 (사례, FAQ)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회계 - 내부회계관리제도 -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료'에서 확인·다운로드 가능

참 고 **운영실태보고서 위치 안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접속 후, 회사의 '① 사업보고서' 또는 '② 감사보고서' 검색

①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내 첨부서류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선택 후, 좌측의 목차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클릭

②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의견' 하단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확인